

『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1월 28일

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 홍 태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·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, 용어 정의, 책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5조)
 - 조례의 용어 정의와 기본원칙
 - 시장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

○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
(안 제6조 ~ 제10조)

-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
- 재정 및 경영, 홍보, 우선구매 등 지원
- 사회적경제 교육·홍보

○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 제20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,
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,
「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회계과 및 주민복지과와
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침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중 우

○ 본 「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은

- 사회적경제는 우리시대에 만연한 사회양극화, 청년실업,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.
-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 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